#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18

발의연월일: 2025. 6. 11.

발 의 자:이종배·강승규·김성원

정동만 • 김재섭 • 이만희

서천호 · 엄태영 · 김민전

신동욱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나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업체가 2020년 17곳에서 2024년 226곳으로 급증하였고, 일명 '상품권 깡'을 통해 62억 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행위 조사 체계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6조의4제7항 신설).
- 나. 부정유통행위의 유형으로 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대가로 지급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 위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자가 온누리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26조의5).
- 다. 부정유통행위로 이득을 얻은 가맹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9 신설).
- 라. 온누리상품권 관련 위반행위 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6조의10 및 제74조제2항제2호 신설).
- 마.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대가로 지급한 개별가맹점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4조제1항제1호).

#### 법률 제 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4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 등록 현황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 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매월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의5의 제목 중 "가맹점"을 "가맹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대가로 지급하는 행위
- ④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여 서는 아니 된다.
- ⑤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온누리상품권을 재판매하는 행위
- 2. 가맹점에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요구하는 행위

제26조의6제1항제3호 중 "제26조의5"를 "제2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

지 중 어느 하나"로 한다.

제26조의9 및 제26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의9(과징금의 부과)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제26조의5제1항제2호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부당이득금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따라 징수한다.
- 제26조의10(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조의5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거나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 가맹점, 관계 법인·단체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직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26조의5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 인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대가로 지급한 개별가맹 점
- 2. 제2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
- 2. 제26조의10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 ~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①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
	점 등록 현황을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매월 공개하여
	<u>야 한다.</u>
제26조의5( <u>가맹점</u> 의 준수사항) ①	제26조의5( <u>가맹점 등</u> 의 준수사항)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3.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u>상인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u>
	용역의 제공을 대가로 지급하
	<u>는 행위</u>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u>&lt;신 설&gt;</u>	⑤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 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거 나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 여야 한다.

- 1. 2. (생략)
- 3. <u>제26조의5</u>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 설>

<u> </u>	
1. 온누리상품권을 재판매하는	<u>.</u>
<u>행위</u>	
2. 가맹점에 온누리상품권 환전	
을 요구하는 행위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_
등) ①	_
	_
	_
	_
	_
	_
	-
	-
,	
1. • 2. (현행과 같음)	
3. <u>제26조의5제1항부터 제3항기</u>	_
<u>지 중 어느 하나</u>	-
제26조의9(과징금의 부과) ① 중	-
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가맹점이	
제26조의5제1항제2호 또는 제3	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

을 얻은 때에는 부당이득금의

<신 설>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 과기준,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 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 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 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6조의10(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 조의5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 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거 나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신 고가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장, 가 맹점, 관계 법인 · 단체의 장에 게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로 하여금 그 사무소

제74조(과태료)	① 다음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에게
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 1. 제26조의5제1항제3호를 위반 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 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 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 2. 제2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환전을 대행한 환전대행가맹 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생 략)

에	출입さ	하여	장	부 •	서류	등을
검기	사하게	할	수	있디		

- 1.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 직원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게 내보여야 한다.

제74조(과태료) ①	

- 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대가로 지급한 개별가맹점
- 2. 제2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 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 한 자

2	 	 

1.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2. 제26조의10에 따른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u>기피한 자</u>
<u>2.</u> (생 략)	<u>3.</u> (현행 제2호와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